

도시관리계획(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462호(2014.12.26.)로 최초 결정되고, 제2022-412호(2022.10.13.), 제2025-617호(2025.11.13.), 강북구고시 제2026-10호(2026.1.15.), 제2026-83호(2026.06.18.), 제2026-104호(2026.07.23.)로 변경결정된 “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”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6년 8월 20일
강 북 구 청 장

I. 결정(변경) 취지

- 우리구 ‘미아동 130-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(시고시 제2026-429, 2026.07.23.)’에 ‘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’ 일부가 편입되어,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해당 필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(경미한 변경) 함.

II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사항

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: 변경
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구역명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	강북구 미아동 197-5일대	132,786.9	감) 757.2	132,029.7	서고 2014-462 ('14.12.26)	-
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

구 분	구역명	결정 내용	결정 사유
변경	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	-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면적 감소 - 미아130일대 정비구역 일대 도로 제척 132,786.9 → 132,029.7	-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미아동 130번지 일대 정비계획수립을 통해 도봉로20가길의 교통체계 개선 추진 -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미아동 130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(신설)에 따른 구역 제척

2.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: 변경

1)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: 변경

■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구 분		면적 (㎡)			구성비 (%)	비 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 계		132,786.9	-	132,029.7	100.0	-
주거지역	제3종일반주거지역	127,679.1	감) 757.2	126,921.9	96.1	-
상업지역	근린상업지역	5,107.8	-	5,107.8	3.9	-

■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

구역명	용도지역		면적 (㎡)	변경사유
	기정	변경		
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	제3종 일반주거지역	-	감) 757.2	-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미아동 130번지 일대 정비계획수립을 통해 도봉로 20가길의 교통체계 개선 추진 -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미아동 130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(신설)에 따른 용도지역 면적 감소

2)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: 변경없음

3)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: 변경없음

3.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 : 변경없음

4.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: 변경없음

III. 관계도면 : 붙임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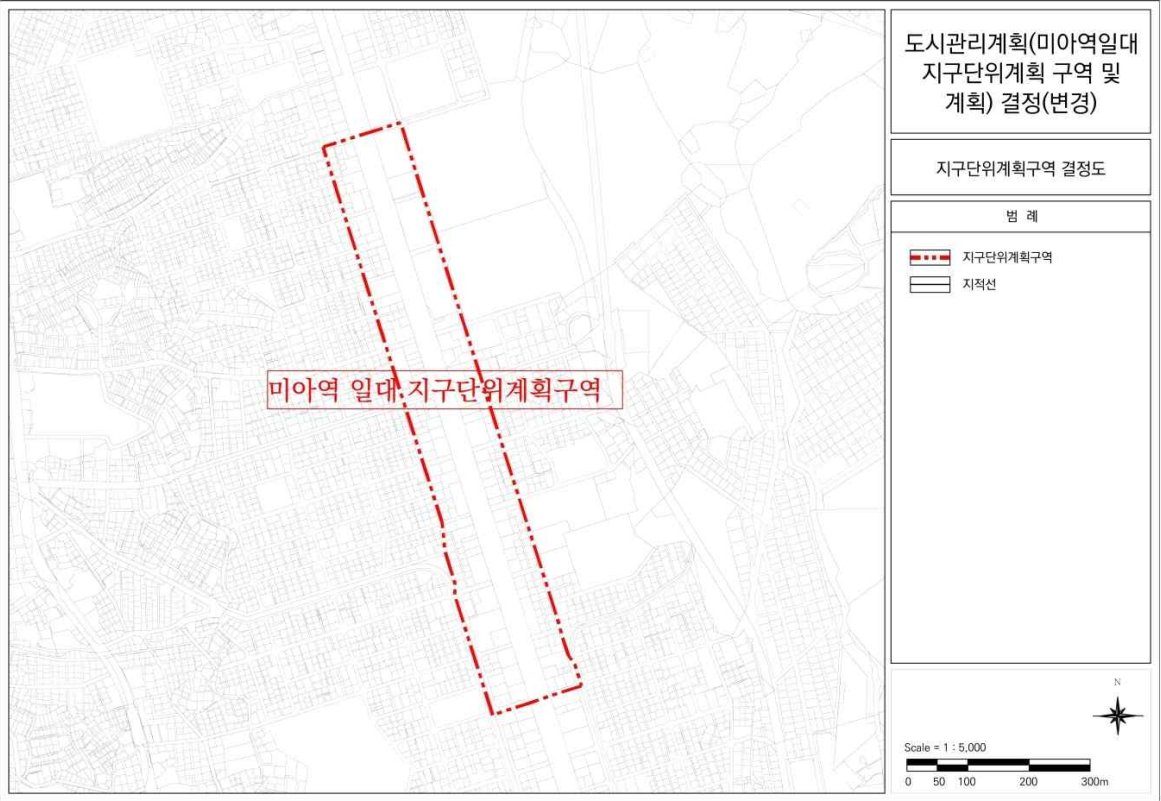
IV. 열람장소

○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강북구 도시계획과(☎02-901-6873)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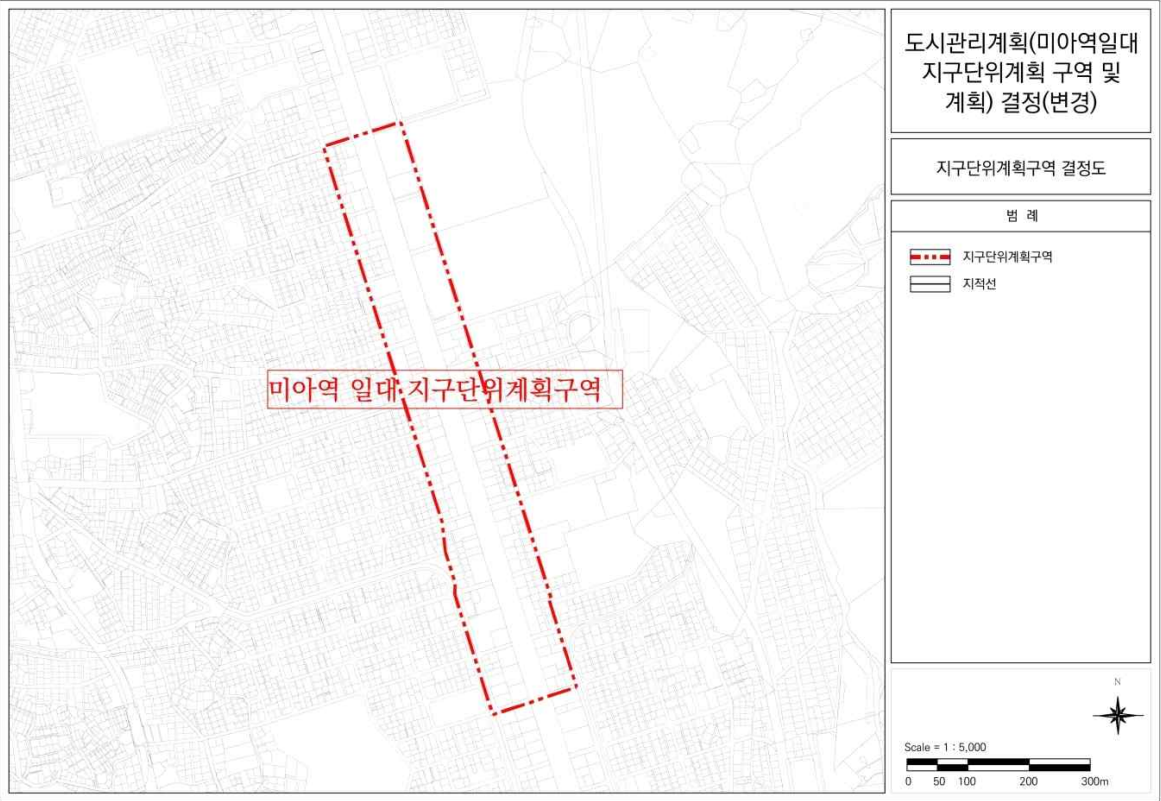
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강북구홈페이지, 서울도시공간포털(<https://urban.seoul.go.kr>) 및 토지이음(<https://www.eum.go.kr>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[붙임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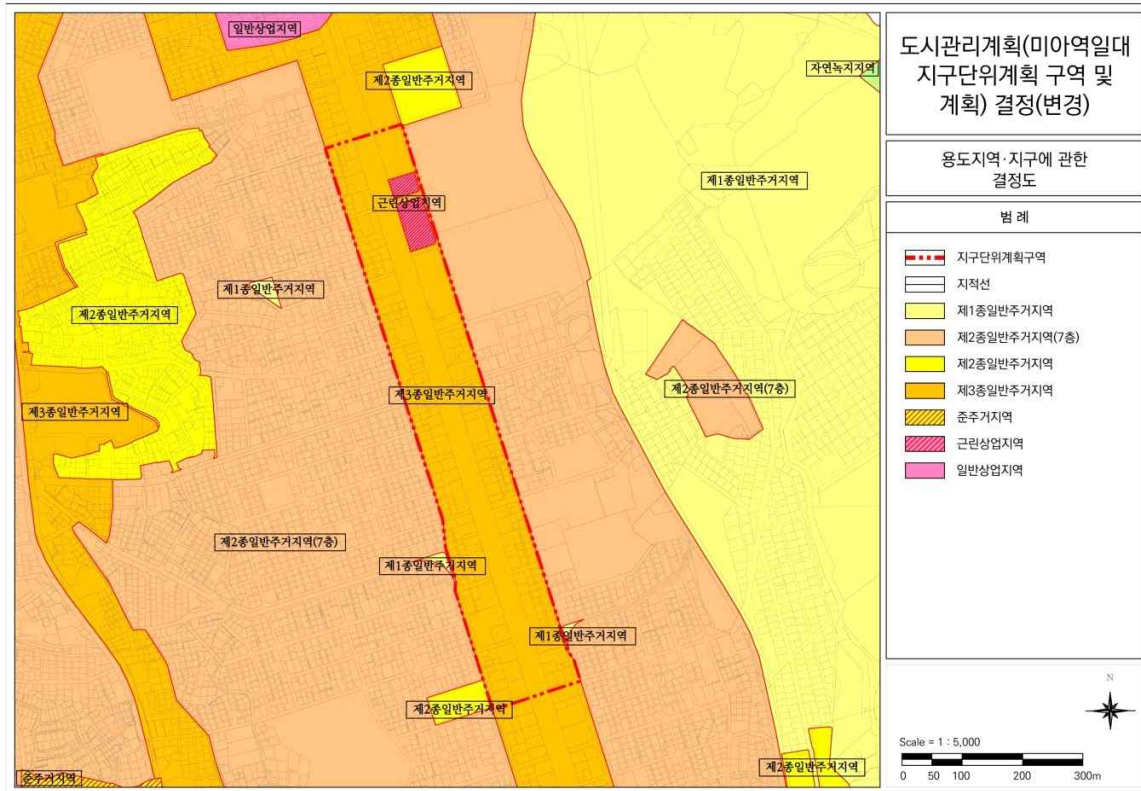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(기정)


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(변경)



■ 용도지역·지구 결정도(기정)



■ 용도지역·지구 결정도(변경)

